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원 자 력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제처 주관 이의신청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당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했던 원자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 규정을 상위법인 원자력 진흥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(법률 제21758호, 2026.6.9. 공포 및 시행)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(제15조의2)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원자력 진흥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 예고(2026. 08. 03. ~ 09. 14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5조의2(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	
연 락 처	(044) 202 - 4645